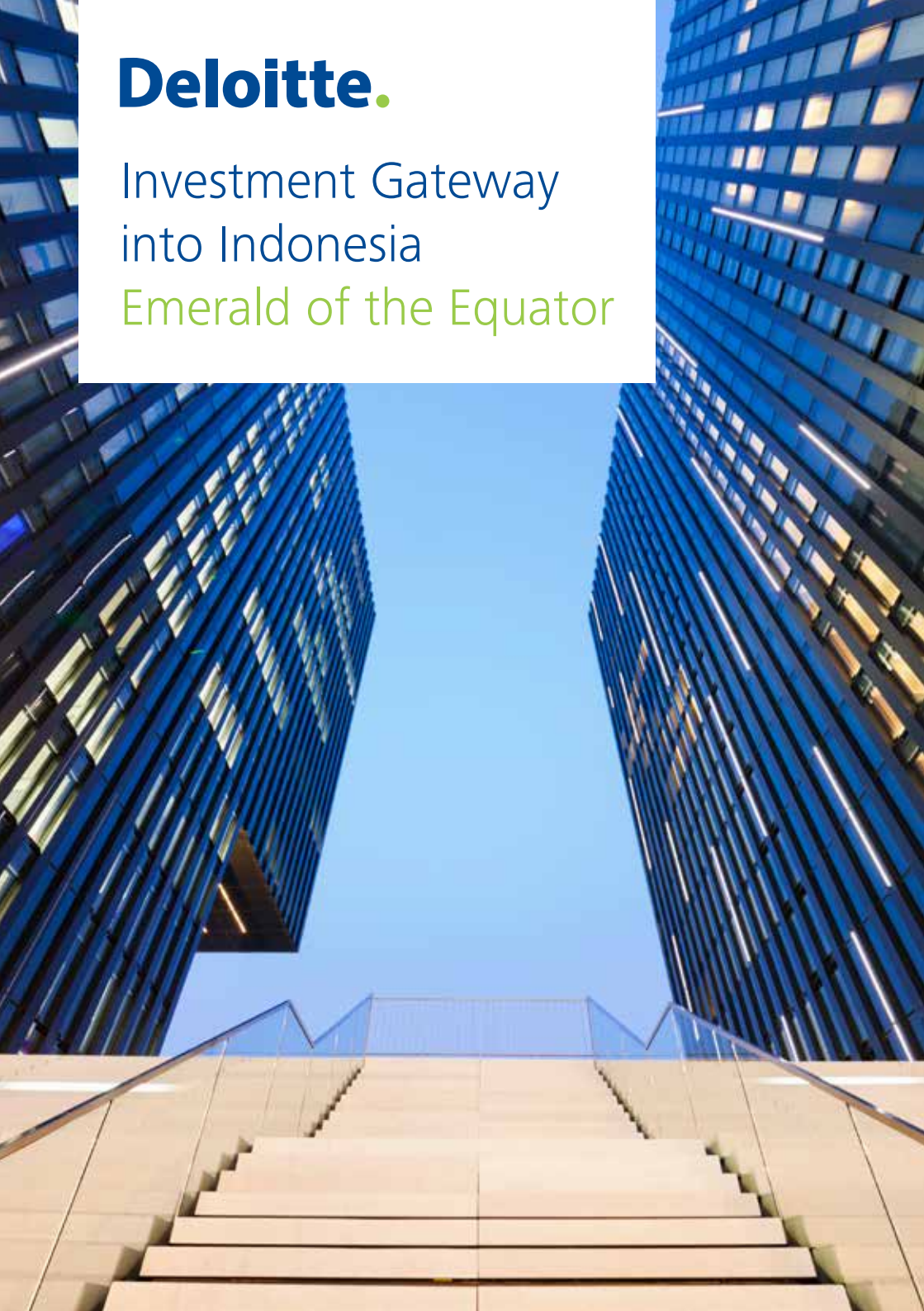


The Deloitte logo is positioned at the top left of the page. It features the word "Deloitte" in a bold, dark blue, sans-serif font, followed by a small green dot.

Investment Gateway  
into Indonesia  
Emerald of the Equator





# Foreword (머리말)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하여 신규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아세안 창립 멤버로서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는 아세안의 목적에 공감합니다. 보다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포함하는 여러가지 정책들이 투자확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현지 및 국제적 투자자와의 파트너십을 고취하는 계획, 프로그램, 및 법제정이 계획되고 준비되었습니다.

(Investment Gateway into Indonesia – Emerald of the Equator) 라는 본 책자는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빠르고 명확한 대답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책자의 편찬에 기여한 딜로이트 인도네시아 전문가팀에게 매우 감사함을 전합니다. 본 책자는 장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어떻게’ 뿐만 아니라 ‘왜’와도 관련됨)에 대한 저희들의 질의응답 경험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책자는 모든 장래 투자자들에게 많은 영감과 지식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하며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많은 기회들을 발굴하는데 주요한 수단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Danilo Alcantara**  
Country Leader  
Deloitte Indonesia

# 목차

---

## A. Introduction to Indonesia (인도네시아 소개)

1. Macro Outlook (거시적 전망)
2. Demography (인구학)
3. Investment Climate (투자환경)
4. Industry Overview (산업개관)

---

## B. Establishment of Company (회사설립)

1. General Investment Policy (일반 투자 정책)
2. Bonded Storage (보세 장치장)
3. Government Agencies (정부 기관)

---

## C. Taxation in Indonesia (인도네시아 조세제도)

1. Tax incentives (조세 인센티브)
2. Business taxation (사업 조세)
3. Taxes on individuals (개인 조세)
4. Indirect taxes (간접세)
5. Withholding taxes (원천징수세)

---

## D. Audit & Compliance (회계감사 & 컴플라이언스)

1. Accounting Period (회계 기간)
2. Currency (통화)
3. Language, Accounting Basis and Standards (언어와 회계기준)
4. Audit Requirements (감사 요구 사항)
5. Independence (독립성)

---

## E. Labour Environment (노동환경)

1. Employee rights and remuneration (직원 권리 및 보수)
2. Wages and benefits (급여 및 복리후생)
3. Termination of employment (근로관계 해지)
4. Labour-management relations (노사관계)
5. Employment of foreigners (외국인 고용)

About Deloitte

Contacts

## A. Introduction to Indonesia

### 인도네시아 소개

# A. Introduction to Indonesia

Republik Indonesia/ Republic of Indonesia (executive presidency)

민족: 인도네시아인 (40%의 자바인, 16%의 순다인, 44%의 다른 종족)

언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business, professional)



Total Area: 1,904,569 sq km (15<sup>th</sup> largest)  
Land: 1,811,569 sq km  
Water: 93,000 sq km  
Population: 252,164,800 est. 2014 (4<sup>h</sup> largest)

**Major Islands:** Sumatera, Java, Kalimantan (Borneo), Sulawesi (Celebes), and Papua  
**Minor Islands:** Maluku, Lesser Sunda Island (Nusa Tenggara)

## 1. Macro Outlook (거시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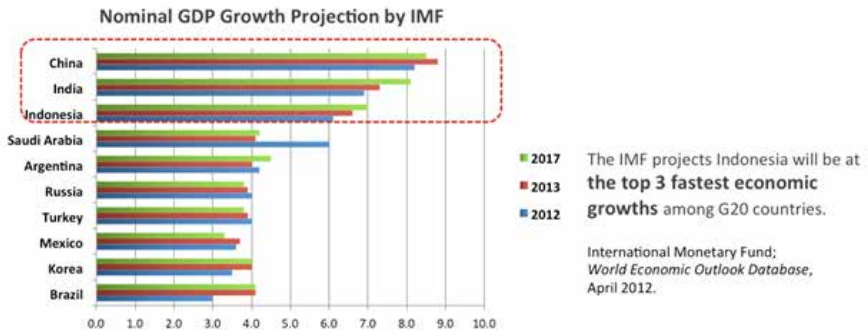
2014년 첫3분기동안 GDP 실질 성장률이 5.1%이며 지난 5년간에 가장 느린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낮은 민간소비때문이 아니라 순수출의 하락때문이다. 투자 성장률은 3분기에 둔화되었지만 정부의 목표는 2015년에 5.7%의 성장을 이루고 2019년까지 7%를 달성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인플레이션은 2014년 8.36%에 달했으며 2015년에 5% 이하로 유지할 예정이다.

Indicator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Growth (% , y-o-y)	5.1	5.7	6.3 - 6.9	6.8 - 7.4	7.2 - 7.8	6.7 - 8.3
Inflation (% , y-o-y)	7.6	4.4	3.0 - 5.0	3.0 - 5.0	2.5 - 4.5	2.5 - 4.5
Interest rate (% , average)	5.8	6.0	5.0 - 7.0	5.0 - 7.0	4.5 - 6.5	4.5 - 6.5
USD exchange rate	11,900	11,900	12,125	11,900	11,850	11,800

Table: Government Macroeconomic Assumptions



2014년 인도네시아 GDP는 USD 8,500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1인당 GDP는 USD 3,509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RPJPN(장기적인 국가 발전 계획)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25년까지 중진국 수준의 일인당 평균소득을 달성할 예정이다. GDP에 가장 큰 공헌을 하는 것은 제조업 부문이며 농업, 축산, 임업, 수산업, 호텔 & 레스토랑 영역이 그뒤를 잇고 있다. 민간소비는 여전히 주요 전체 추진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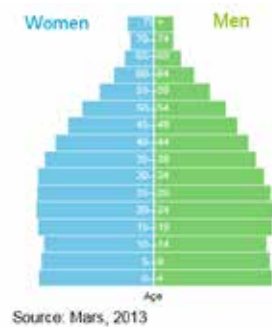


## 2. Demography (인구학)

인도네시아는 만 7천여 개의 섬과 2.51억여 명의 인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 인구 4위 국가다. 인구적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인구의 60%가 20-65세이며 부양비율은 낮고 문맹률이 낮으며 역동적임;
- 인구의 약 52% 도시지역 거주;
- 인도네시아 인구는 동남아 10개국 총인구의 39% 이상을 이루고 있음.





2012년에서 2017년사이의 취업인구는 총인구의 0.5%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0.7%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는 빠른 성장성을 갖고 있는 소비력이 큰 소비층을 보유하고 있다. 매년 약 700만 명씩 중산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지출은 200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연평균 성장률 13.8%로 증가했지만 2012년에서 2017년까지 11.5%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Investment Climate (투자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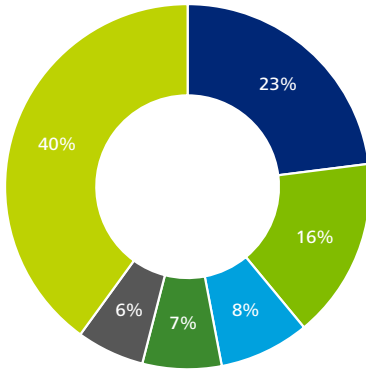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성공의 큰 부분은 발전적인 중산층 및 경제의 안정적 성장의 결과다. 인도네시아는 MINT (멕시코,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터키) 의 멤버고 좋은 인구 프로필덕으로 장기 투자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나라다.

인도네시아의 채무와 GDP 비율은 2001년의 83%에서 2013년 말까지 26% 이하로 감소했으며 국가채무가 없는 싱가포르를 빼고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에 가장 낮은 GDP 대비 부채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로 인도네시아는 좋은 평을 받고 있다. Rating은 세계금융위기로부터의 회복력, 개선되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외부 신용도, 국내정치 조정력 등을 반영한다.

평가 기구	비율	전망
피치 레이팅스	BBB-	Stable
무디스	Baa3	Stable
스탠더드 앤드 푸어	BB+	S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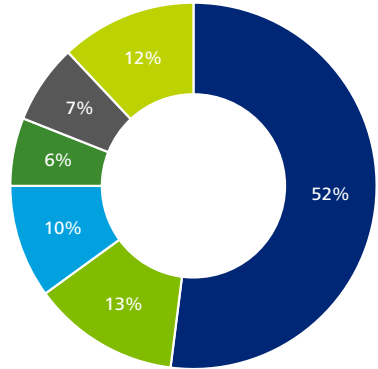
소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2015년

2014 년의 FDI Realization:  
지역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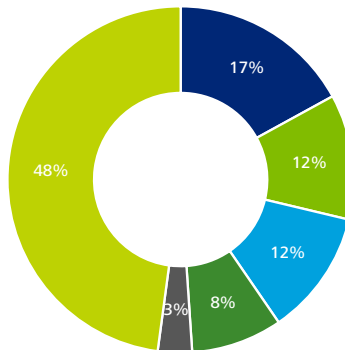
- 서부자바
- 자카르타
- 동부칼리만탄
- 반튼
- 동부자바
- 기타

2014년의 4분의 FDI Realization:  
투자국기준



- 기타
- 싱가포르
- 일본
- 한국
- 중국
- 말레이시아

2014년의 FDI Realization: 업종기준



- 광업
- 운송업, 창고업, 통신업
- 식품업
- 화학과 약품 산업
- 기초 금속, 기계, 전자 공학
- 기타

#### 4. Industry Overview (산업개관)

인도네시아 모든 주요 사업 분야의 중요한 역할로 인해 인도네시아 경제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역사적으로 농업이 고용과 생산 측면에서 주요한 부문이 되고 있으며 지난 40년간 개발해 왔던 광범위한 광물자원 보유로 인해 광업분야가 인도네시아 국제수지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다각적인 무역경제를 가지고 있다. 석유 및 가스는 이 나라의 가장 큰 수출 부문이고 석탄(및 기타 광산물), 야자유, 농작물, 전기 기계 및 장치, 광물연료, 수산이 그뒤를 잇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 상품의 생산을 증대할 예정이다.

Commodity	2014 (million ton)	2019 (million ton)
쌀	69.9	82.0
옥수수	18.6	23.4
콩	0.89	1.02
설탕	2.8	3.4
소고기	395.1	459.9
어류	24.9	40 – 50

Table: Government Medium-Term Commodity Agenda

새로 선출된 정부는 더 좋은 기반 시설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연결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높은 물류비용을 낮추게 하기 위하여 서도에서 동도사이에 중심 경로의 항구를 통해 인도네시아 다도해를 연결하도록 'sea toll road' 개념을 도입했다. 또한, 정부는 도로, 유료 도로, 공항, 철도를 더 많이 건설할 예정이며 자바 섬뿐만 아니라 수마트라 섬, 칼리만탄 섬, 술라웨시 섬, 파푸아 섬을 포함할 계획이다. 더욱이, 정부는 2019년까지 96.61%의 전력보급율을 달성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5,000 MW 발전을 도입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10,000 MW Fast Track 프로그램 (1&2단계) 보완이 목적이다.

Some of the government's targets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are listed in the table below.

Infrastructure	2014	2019
신작로	1,028 km	2,650 km
유료 도로	260 km	1,000 km
철도	5,434 km	8,692 km
항구	278	450
공항	237	252

Table: Government Medium-Term Infrastructure Agenda







## B. Establishment of Company (회사설립)

# B. Establishment of Company (회사설립)

## 1. General Investment Policy (일반 투자 정책)

### Business environment (기업환경)

아세안의 창립 멤버로써 인도네시아는 무역과 투자 자유화라는 아세안 설립 목적에 전념한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와 함께 세 창립 국가 동맹으로 아세안에 2020년인 예상보다 일찍 단일 시장을 창출하도록 요구한다. 인도네시아는 2003년에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하고 2005년에 아세안-한국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했다. 2007년에 인도네시아와 일본은 인도네시아-일본 경제협력협정에 서명했다.

### Price controls (가격관리)

일부 품목과 서비스는 여전히 “가격 관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석유, 전기, LPG, 담배, 시멘트, 병원업, 의약품, 음료수, 시내운송, 항공 운송, 전화료, 기차, 소금, 통행료, 우편요금에 여기에 포함된다.

### 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

인도네시아 지적재산권법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및 의장권을 인정한다. 허가자와 허가 소지자는 침해를 고소할 권리가 있다. 민사사건으로 상업법정에 배정하며 중재를 통한 해결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 등록은 의무다. 상표보호는 10년간 유효하고 10년 추가기간으로 연장될 수 있다. 표준 특허는 20년간 유효하고 단순 특허는 10년간 유효하다.

저작권법은 과학, 예술 및 문화를 포함한다.

### Currency (통화)

인도네시아의 통화는 루피아(IDR)다.

### Banking and financing (금융 및 재무)

1998년에 개정된 1992년의 은행법은 시중 은행 및 지방 은행 (BPR) 등 2가지 일반은행을 허용한다. 남아 있는 기능적 특징은 당좌예금을 제공하는 은행과 제공하지 않은 은행 (주로 BPR) 사이에 있다. 간단한 은행 업무를 하는 BPR는 소규모로 운영하고 저소득층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환거래가 특별한 자격증과 허가증을 요구하지만 시중 은행은 다양한 은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다. 시중 은행과 지방 은행은 전통은행업 또는 이슬람은행업 둘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다.

중앙은행은 Bank Indonesia이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금융가는 자카르타, 스마랑, 반둥과 수라바야(주요 섬인 자바섬에 있음), 메단과 팔렝방(수마트라섬에 있음), 덴빠사르(발리섬에 있음) 그리고 마까사르(술라웨시섬에 있음)에 위치한다.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의 오프쇼어 금융의 역할을 한다.

### Foreign investment (해외 투자)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PKM)은 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 및 국내투자의 촉진과 허가를 책임진다. 다른 정부기관이나 부처는 석유 및 가스, 은행 및 보험업 투자를 관리한다. 투자조정청이나 해당시도협회는 외국 및 국내 투자의 모든 부문을 승인한다.

인도네시아에 실행하자고 하는 외국 투자자는 보통 유한 책임 회사를 결성하고 (2007년 No. 40 회사법에 근거) 투자조정청에서 사업허가증(2007년 No. 25 투자법에 근거)을 얻어야 한다.

많은 사업부문이 2004년 No. 39 대통령령에 의거 외국투자회사에 조건부로 개방되어 있으며 외자소유에 대한 제약을 가지고 있다.

국가이익을 위하거나 보상금이 지불되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국영화하거나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다.

### Exchange controls (외환관리)

국내 통화인 루피아는 자유롭게 바꿀 수 있지만 1억여 루피아를 국외로 반출하기 전에 Bank Indonesia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Bank Indonesia의 인가는 현금 인출기 시험과 해외 박람회 그리고 은행이 인식하는 공익을 꾀하는 목적을 위해 제공된다.

1억여 루피아를 운반하는 사람은 인도네시아로 도착 즉시 인도네시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은행으로부터 1억 루피아 이하의 전신 송금 요청에는 고객이 서명한 공식 증빙이 첨부되어야 한다. 비거주자에게 10만 달러 이상 전신 송금 고객으로부터의 증빙이 첨부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외국으로부터 또는 외국으로 외화자금이체를 제한하지 않지만 인바운드 투자 자본은 허가를 요구한다. 은행이 국가의 외환 노출 monitor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월례 보고서와 함께 외채를 Bank Indonesia에 등록하여야 한다.

국내 민영은행은 외국환거래에 대한 월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환거래에 대한 월례 보고서를 지연 제출할 경우 늦게 제출하면 일 500만 루피아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외국환거래 미보고는 1억 루피아 벌금이 부과된다. 6개월 간 보고서 제출하지 않으면 은행업인가가 취소된다. 금융기관도 외국환거래의 월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연 제출시 일 100만 루피아 벌금이 부과되고 미보고는 2000만 루피아 벌금이 부과된다.

비금융기관은 금융자산 움직임 (예를 들어 해외기업의 자본과 해외은행 예금 등), 거주자와 비거주자사이에 부채 (예를 들어 해외대출과 매입채무 등), 거주자의 해외거래를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기준은 최소한 1천억 루피아의 총자산이나 최소한 1천억 루피아의 연간 매출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국내 은행이나 금융 서비스를 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007년 No. 25 투자법은 외국투자가 세후순익, 특정비용 또한 보상에 대해 송금할 전환을 보장한다.

인도네시아에 진행하는 현금지불과 다른 금융거래에 만족한 결제 채무의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루피아를 이용하여야 한다. 국가예산 이행, 해외 지원금 수령, 국제상거래, 외화예금, 해외 차입금 거래, 등과 관련된 거래에 면제가 적용된다.

### Principal forms of business entity (기업체의 기본형식)

2007년 No. 40 회사법은 주식 회사(Perseoran Terbatas/PT)를 규정한다. PT는 가장 흔한 기업형태이고 투자법 아래에 외국인 투자자에 제한된 것이다. 외국기업 지점은 금융, 석유 및 가스 부문 외에는 허가되지 않는다.

특정 부문의 외국인투자에 제한이 있음을 주지하여야 하며 infrastructure 부문 합작에 있어 파트너 자본은 최소 67%이어야 한다.

### Formalities for setting up a company (회사설립절차)

외자기업(PMA 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BKPM에서 Principle Licens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립 증명서와 정관도 중요하다. 정관 초안 작성하기 위하여 공증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며 공증인은 필요 서류 획득을 지원한다.

투자법이나 관련법의 규정과 final terms of the individual foreign investment agreement에 따라 정관 초안에는 회사 목적, 위치, 자본과 운영 규칙이 언급되어야 한다. 정관 초안에는 회사 창설자, 이사 및 감사 그리고 주주들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설립을 위하여 PT PMA의 영업부문에 따라 Principle License는 1년간부터 3년간까지 유효하다. 예를 들어 services company는 보통 1년간-2년간 유효하며 제조 회사는 3년간 유효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PMA를 만들어야 하고 법무인권부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받으면 PMA 회사가 설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무역부가 하는 회사등록증 발행은 1주일 더 걸린다. 정관에 명기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법인 자본은 루피아화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외환 (예를 들어 미국 달러) 표시는 미래 지불 반환을 위하여 괄호안에 언급할 수 있다. 외국의 주주가 소유하는 자기 자본 (may be up to 100%)은 정부가 승인하는 외국투자의 루피아 가치와 같아야 하고, 투자허가를 발행하는 날에 사용하는 환율로 계산한다.

회사 장부는 보통 루피아화와 인도네시아어로 표시한다. 국세청(DGT)의 승인을 받아 장부는 미국 달러화와 영어로 표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주 단위로 회계와 세금납부에 사용할 환율을 책정한다. 장부, 기록, 대차대조표와 관련서류 사본은 10년간 인도네시아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일정금액의 이익금은 충당금으로 발행자본금의 최소 20%까지 정립하여야 한다.

### Forms of entity (기업형태)

#### Requirements for a 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요건)

**Capital (자본):** 2013년 No. 5 BKPM 규정에 따라 토지건물을 빼고 1년간 운전자금, 기계, 등을 포함하여 최저 출자총액은 100억 루피아(약 USD 120 만)이고 최소한 USD 30만(25%)는 발행 및 납입되어야 한다. 보통 3:1 범위

내에 부채자본비율은 허용된다. 특정 부문에 더 높은 수준 자본 규정이 적용된다 (예, 운송업 USD 200만). 모든 발행자본은 지불되어야 하며 지불 증빙을 법무인권부에 제출해야 정관이 들어 있는 설립증명서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 뒤에 발행된 모든 주식은 전액납입되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회사의 경우에 자본의 루피아 가치는 투자허가 시점의 환율로 산정된다. 그러나 외화 자본금 납부의 루피아 가치는 지불 시점의 환율로 산정된다. 이러한 계산은 독립감정인이 평가한 현물 지불에 적용된다. 자기주식 매입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자기주식 매입금 지불이 순이익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 순자산이 납입자본금과 필요충당금 합계금액 이하로 저하되어서는 안된다.
2. 회사나 그 자사들이 소유한 (또는 pledged in favour of) 총주식금액의 합이 총납입자본의 10%를 넘지 않음

자본의 증가와 감소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감사도 채권자의 이익이 없어야 한다.

**Founders, shareholders** (창업자, 주주): 회사법에 따라 주주는 항상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한다 (2명의 개인, 2개의 회사 또는 개인과 회사의 복합). 주주 책임은 출자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소수지분의 최소주식은 외국 주주 1% 이며 현지 주주 5%이거나 USD 1,000 이다.

**Board of directors/management** (이사회제도): 회사는 적어도 이사 1명과 감사 1명이 있어야 한다. 어떤 기업들 (특히 공개 기업)은 적어도 이사 2명과 감사 2명이 있어야 하고 은행은 적어도 이사 3명과 감사 2명이 있어야 한다. 이사는 1명 이상이 있으면 각자에게는 회사를 대표할 권리(정관에 언급된 예외 포함)가 있다. 외국이나 국내 합작 투자 사업에서 이사회 구성은 보통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 자본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사들은 선의적으로 의무를 완수해야 하며 실질적인 회사 자산의 처분이나 지출부담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상기의 승인을 받기 위해 발행주식의 최소 75%를 대표하는 주주가 주총에 참여하여야 한다. 최소한 발행 주식의 75%의 대표는 승인을 받기에 총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회사의 총발행주식의 최소한 10%를 집단으로 갖고 있는 하나 이상의 주주는 실수나 태만의 결과로서 회사가 해를 입은 것에 대한 민원을 이사회 감사에 회사 이름으로 제기할 수 있다.

연간보고서를 결재하고 이익 총당 또는 배당을 결정하기 위해 적어도 일년에 한 번 주주총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결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열어야 한다. 결정은 다수결로 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대로 한다. 이사나 감사에게 이임될 수 없는 주주총회 기능은 정관 수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합병, 연결과 해산이다.

**Taxes and fees (세금과 비용):** 공증료는 회사의 수권자본의 0.1%-1%이지만 협상 가능하다. 설립 증명서에 명목 인지세가 부과된다.

**Types of shares (주식 종류):** 회사 자본은 분류가 다양한 출자자본으로 발행될 수 있으며 그 중 적어도 하나는 보통주여야 한다. 주식은 등기될 수도 있고 무기명도 될 수 있지만 전액불입 전에 발행되지 못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 보유하는 모든 주식은 등록서에 있어야 한다. 보통주와 우선주는 허용가능이지만 우선주 후속 발행주식은 이미 우선주를 보유하는 자에게만 발행할 수 있다. 정관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으면 각 주식은 보통 한 표를 갖는다.

### Branch of a foreign corporation (해외 회사의 지점)

투자법에 따라 전적으로 또는 주로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소유 기업은 개별 사업단위로써 인도네시아 법규에 의해 조직하고 인도네시아 거주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 은행과 석유 & 가스 회사를 빼고 지점은 보통 허가되지 않는다. 무역업, 건설업, 외국 뉴스기관, 등 다른 기업은 사무소로 설립할 수 있다.

### Representative office (사무소)

외국 회사는 무역대표 사무실을 설립할 수 있지만 투자조정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무역대표 사무실은 기업홍보나 시장 조사 업무만 할 수 있다. 금융부문을 제외한 지역 대표 사무실(RO) 설립 역시 투자조정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능한 활동은 감독과 조정에 제한되며 생산시설 또는 영업활동을 보유/ 유지하지 못 함으로 인해 계약 수주, 입찰 참여, 계약서 서명 또는 상품 수입이 금지다. 외국 건설업 대표사무소는 공공사업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Joint Operation을 통해 가능하다.

## Regulation of business (업무규정)

### Mergers and acquisitions (기업의 인수 및 합병)

회사법은 기업의 인수, 합병, 취득, 분할을 규정한다. 합병은 보통 주주의 75%의 동의를 얻어 승인된다. 소수지분 주주를 위한 주식 매각가격은 공정해야 하며 이를 위한 보호 장치가 제공된다. 존속회사가 회사명과 경영진을 유지하지 않으면 합병 회사는 새로운 회사명과 경영진을 채택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합병은 하나 이상의 회사가 단일 존속회사에 합병 (다른 회사의 해산을 계속 하면서) 해야만 가능하다. Consolidation의 경우 둘 이상의 회사가 새로운 회사에 합병되고 각 최초 회사는 해산된다. Acquisition의 경우는 개인 또는 기업이 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여 통제권이 이양되는 경우이다.

### Monopolies and restraint of trade (독점 및 거래 제한)

독점및불공정경쟁금지법은 한 회사의 50% 이상 국내시장점유를 금지하며 두 개 또는 세 개 회사의 75% 시장 점유를 금지한다. 시장점유는 판매량이 아닌 판매금액으로 결정된다. 관련 법은 경쟁에 대한 수직제한 그리고 독점, 소수독점, 가격 고정, 카르텔, 및 공급자들끼리 지역적 시장 독점을 가능하게 하는 계약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마케팅이 공공복지와 국영기업에 필수적 사항으로 간주되어 소규모기업과 조합은 관련 규정에서 제외된다. 관련 규정 위반 회사에 대해서는 최대 IDR 1000억의 벌금 및 경영진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한다.

### Requirements (요건)

인도네시아 회계기준에 따라 US달러를 기능통화로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외국인투자기업 (PMA),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s, PE), 해외 계열사나 외국납세자를 둔 특정기업은 재무부(Minister of Finance)의 승인을 얻어 영어와 US달러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반면, 생산물분배계약 (Contractors of oil and gas Production Shring Contracts, PSC) 및 도급계약 (Mining Contracts of Work, MCS)의 통제 하에 있는 기업들은 서면 통보만으로도 영어와 US달러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장부 작성방법의 변경은 DGT의 승인으로 가능하다.



## 2. Bonded Storage (보세 장치장)

보세 장치장은 요건들이 충족되고 특별한 목적으로 물건을 보관하고 관세혜택을 얻는 건물, 현장 또는 지역으로 정의된다. 보세 장치장은 아래와 같은 형태를 취한다.

### Bonded Warehouse (보세창고)

보세창고는 수입물품을 보관하는 보세 장치장이지만 물건의 포장/재포장, 분류, 조립, 패키징, 조정 또는 재단 등의 활동이 부가될 수도 있다. 보세 창고 사업자가 보세 창고에 유입하는 수입품은 수입세 연기, 소비세 면제, 및/또는 수입세(VAT, LGST 및 Art.22)의 형태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 시설들은 재수출 목적이나 인도네시아의 다른 세관관할구역 또는 보세 구역에의 지원산업 (제조업) 목적으로 유입되는 상품에만 제공된다.

### Bonded Zone (보세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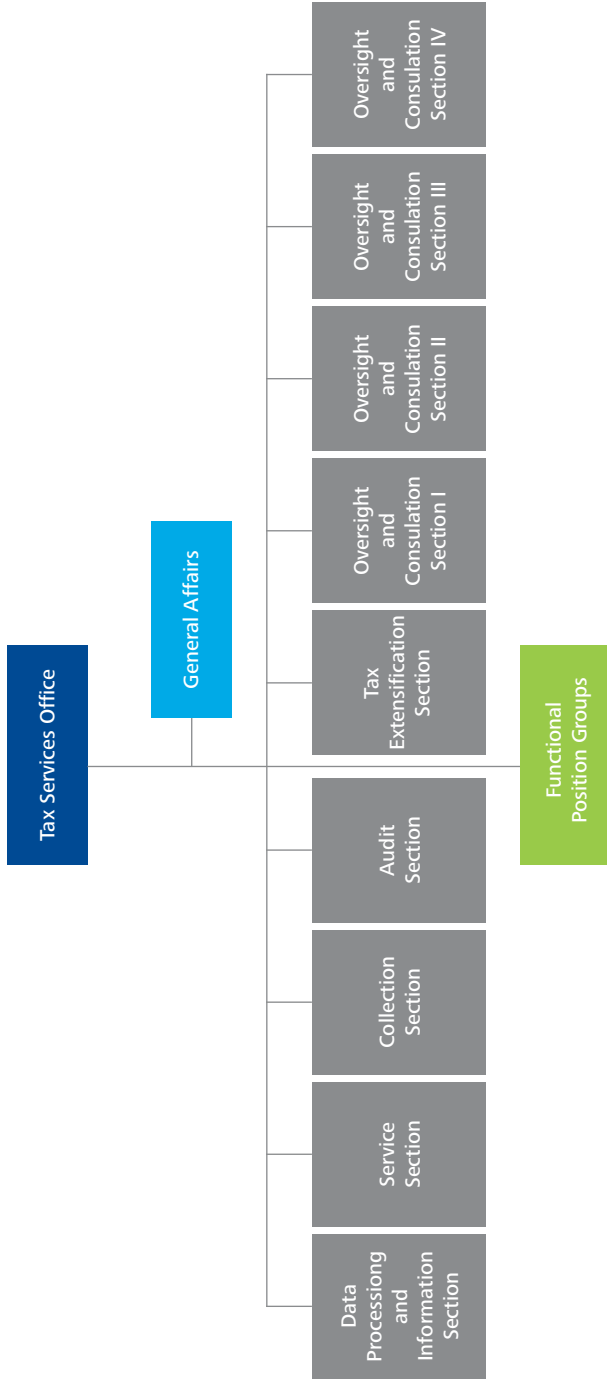
보세 구역은 생산 목적 수입품과 국내저장품(이들의 생산량이 주로 수출 목적을 위함)을 저장하는 보세 장치장 구역이다. 보세 구역 또는 보세 구역으로부터의 물자 수입, 과세대상물의 유입, 물품 배송, 물자 방출, 과세대상물품의 재운송, 기계 대여 그리고 소비세의 대상이 되는 물자는 수입세 연기, 소비세에서의 면제 및/또는 수입세 무징수(VAT, LGST, 및 Art.22)의 형태로 혜택을 받는다. 이 혜택들은 보세 사무용품을 포함하여 구역의 사업자 (PDKB)가 사용할 자본재, 보세 구역에서 생산된 제품과 결합되거나 처리될 재료/제품에만 제공되는 혜택이다. 소모품은 보세 구역에서 이런 혜택을 받지 않는다.

각각의 허가 획득을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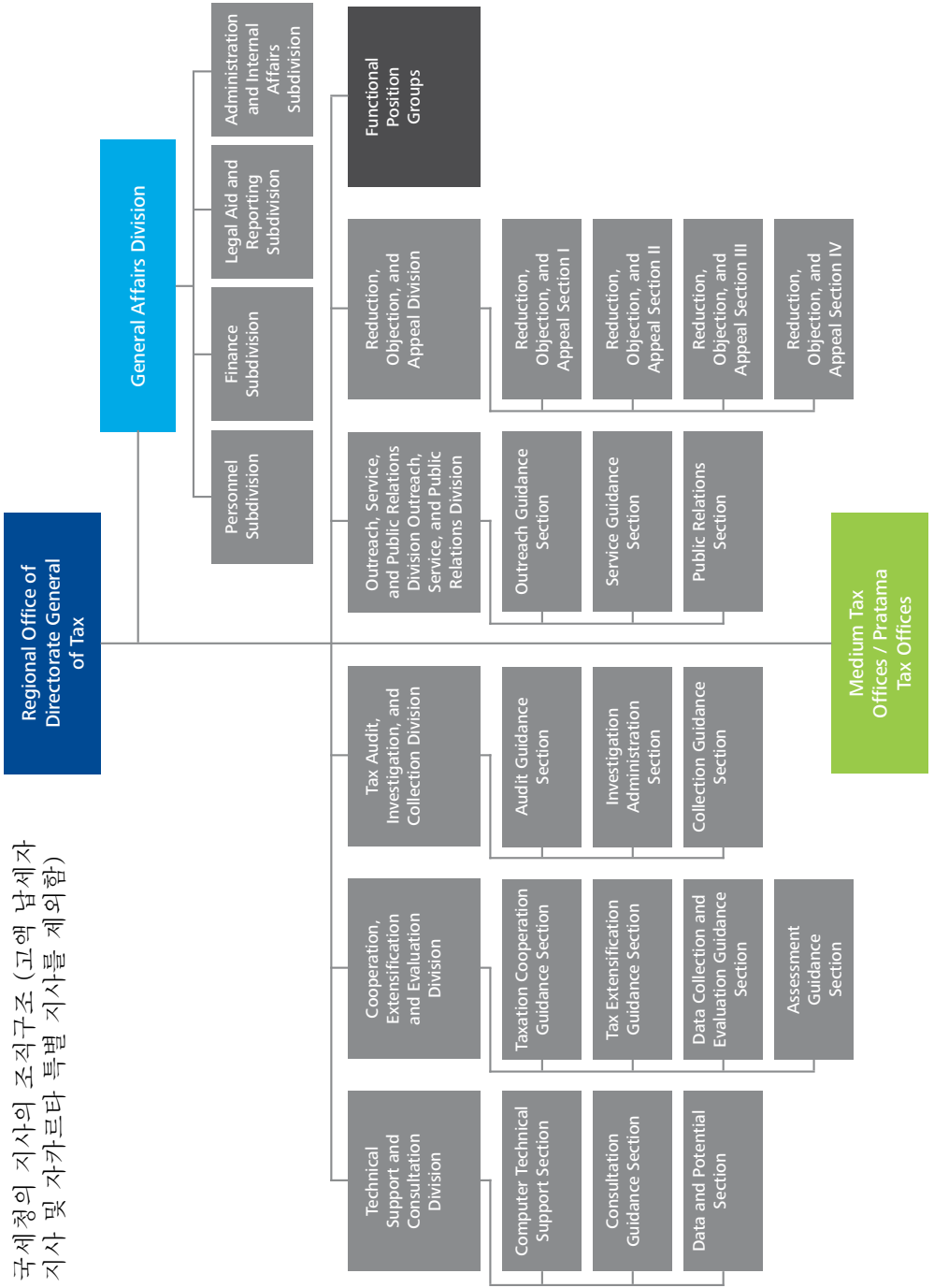


### 3. Government Agencies (제관청)

#### Pratama 세무서의 조직구조



국제청의 지사의 조직구조 (고액 납세자 지사 및 자카르타 특별 지사를 제외함)



## C. Taxation in Indonesia (인도네시아 조세제도)

# C. Taxation in Indonesia (인도네시아 조세제도)

## 1. Tax Incentives (조세 인센티브)

### Income Tax Facility (법인세 혜택)

특정 산업 (정부 규정이 촉진하는 국가차원의 최우선 경제부문) 및/또는 발전할 경제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투자하는 법인 납세자(주식 회사)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투자금액의 30%까지 관세 과표금액 인하
- 세무상 조기 감가상각 및 감모상각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최장 10년까지 연장
-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 원천세율(10%) 경감. 또는, 조세협약에 따라 낮은 세율 적용 가능

이 혜택 요청은 납세자가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재무부 장관은 투자조정청장의 조언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 Income Tax Holiday (소득세 면제 및 감면)

인도네시아는 특정 부문(선도산업)의 국내 또는 외국인 투자를 위한 세금 면제 및 감면기간이 있다. 이 기간은 최우선 경제부문 (예를 들어 비금속, 정유/석유 화학, 기계업,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전기통신설비) 및 오지에의 제조 프로젝트에 적용되며 조세 특례는 아래와 같다.

- 상업생산 개시연도부터 최대 10년에서 최소 5년간 법인세 면제
- 면제 혜택 종료 이후 2년 동안 50%의 법인세 감면
- 재무부는 법인세 면제 및 감면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국가 산업의 경쟁력과 특정산업의 전략적 가치 등 특정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세금 면제 및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선도산업에 최소 1조 루피아를 투자하는 납세자이어야 함
- 총 투자금액 중 최소 10%를 인도네시아 은행에 예치해야 하고 투자계획의 실행 이전에 인출되어서는 안 됨
- 2011년 8월 15일 이전 최근 12개월 이내에 인가된 인도네시아 법인 지위가 있는 신규 납세자이거나 2011년 8월 15일 혹은 그 이후에 인가된 지위를 지닌 기존 납세자이어야 함

## 2. Business taxation (사업 조세)

### Overview (개요)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는 회사에 적용되는 세금은 법인 소득세, 지점 이윤세,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 (VAT), 그리고 토지세 및 인지세와 같은 기타 간접세다.

면세와 다양한 조세 특례는 자격이 있는 회사 (이상에 4.1 테이블과 같이)에 제공된다.

주로 세법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토지건물세법 및 조세기본법이 있다. 조세는 국세청이 실행한다.

Indonesia Quick Tax Facts for Companies	
법인세율	25%
지점세율	20%
양도소득세율	5% / 25%
Basis	전세계
경영참여소득면제	있음
Loss relief	
- 차기로 이월	5 년간
- 소급이월	없음
이중과세방지	있음
연결납세	없음
이전가격규정	있음
과소자본정책	없음
해외 자회사 규칙	있음
과세연도	역년/회계연도로
역년 또는 회계연도	있음
세금의 예납	4개월까지

## 반납일자

비거주자:	
- 배당금	20%
- 이자	20%
- 사용료	20%
- 지점 이윤세	20%
거주자	2% (용역 및 설비임대료) / 10% (토지 및/또는 빌딩 임대료) / 15% (배당금, 이자, 로열티)
자본세	없음
사회보험부담	7.24%-11.74%
토지 및 건물	0.3%
토지 및 건물 취득세	5%
이전세	0.1%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매매); 5% (비거주가 주식거래); 매매가의 5% (토지 및/또는 건물의 양도)
최초 IPO	0.5%
인지세	다양함
부가 가치세	10%

### Residence (거주자)

거주자로 간주되는 회사는 인도네시아에 설립되었거나 주소지를 두거나 또는 경영진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경우다.

세무 목적상 거주자로 간주되는 회사는 인도네시아에 설립되어 있거나 주소지가 인도네시아인 회사 또는 경영진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회사다.

### Capital gains taxation (양도 소득세)

양도소득은 경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자본손실은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매매는 거래가격의 0.1%의 과세가 적용된다.

주식 보유 또는 매각 여부에 관계 없이 최초 설립자 주식은 IPO시 주식 가치의 0.5%가 최종분리 과세대상이 된다.

토지 및/또는 건물 매매 또는 이전은 매각금액 5%의 최종분리 과세 대상이 된다. 비거주자간의 인도네시아 비상장 주식 거래는 매각금액 5%의 최종분리 과세 대상이다. 단, 조세협약이 있는 경우는 예외.

### Double taxation relief (이중과세경감)

#### Unilateral relief

해외소득이 있는 거주기업은 해당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지불한 세금에 대해 공제를 받는다. 세금공제는 인도네시아 세법규정에 따른 한도 규정 적용을 받는다.

#### Tax treaties (조세조약)

인도네시아는 광역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이 조세조약들은 OECD 모형을 따르며 OECD의 정보교환 준수 조항을 포함한다.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모든 유형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limit the taxation by one country of companies resident in the other, 그리고 타국의 차별적 과세로부터 해당국가의 납세자를 보호한다.

조세조약 하의 보호를 받고자 하면 해외 납세자는 거주자증명서 및 Form DGT-1 또는 Form DGT-2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Form DGT-2는 특별히 금융기관 또는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에서 소득을 얻는 회사를 위한 것이다. 거주자증명서는 조약 동반국가의 과세당국의 확인 받아야 한다. 확인을 받지 못한 외국인 납세자는 조약 동반 조세당국이 보통 검증하거나 발행하는 어떤 유형의 거주자증명서든 사용할 수 있다 (특정 요구 조건들이 충족). 이 서류는 작성된 Form DGT-1 또는 Form DGT-2에 첨부되어야 한다. 이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외국인 납세자는 조세조약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인도네시아 조세조약 네트워크

알제리	홍콩	뉴질랜드	수리남
호주	헝가리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인도	파키스탄	스위스
방글라데시	이란	필리핀	시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폴란드	대만
브루나이	일본	포르투갈	태국
불가리아	요르단	카타르	튀니지
캐나다	북한	루마니아	터키
중국	대한민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쿠웨이트	세이셸	아랍 에미리트 연 합국
체코 공화국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영국
덴마크	말레이시아	슬로바키아	미국
이집트	멕시코	남아프리카	우즈베키스탄
핀란드	몽골	스페인	베네수엘라
프랑스	모로코	스리랑카	베트남
독일	네덜란드	수단	



## Anti-avoidance rules (조세회피방지규정)

### Thin capitalization (과소자본)

소득세법은 재무부가 세무 계산 용도로 부채자본비율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인도네시아에는 명확한 자본관련 규정을 갖고 있지 않는다.

### Controlled foreign companies (해외자회사)

인도네시아 실체의 해외자회사 과세가 인도네시아 세법 제18조 2항 그리고 재무부 장관 규정 256/PMK.03/2008 및 국세청 규칙 PER-59/PJ/2010과 같은 규정하에 있는 인도네시아 해외자회사 규칙(CFC)으로 집합적으로 알려져 있는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재무부장관을 통해 소득세법은 다음의 경우 증권거래소에서 자사주를 매각하는 법인을 제외한 해외법인에 자본출자한 거주자의 배당금 수령 시점을 결정한다.

- 가. 거주자가 최소 50%의 발행주식에 자본출자한 경우
- 나. 다른 거주자와 함께 최소 50%의 발행주식에 자본출자한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거주자의 배당금 수령 시점은 다음과 같다.

- 가. 해당 회계연도의 해외법인의 연간 법인세 신고기한 이후 4번째 달
- 나. 해당 해외법인에 연간 법인세 신고의무가 없거나 연간 법인세 신고기한이 없는 경우, 회계연도 말 이후 7번째 달 따라서 해외 자회사가 배당을 유보한 경우 인도네시아 모회사는 배당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모회사의 과세대상으로 간주된다

### General anti-avoidance rule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

인도네시아는 일반조세회피방지규정이 없지만 2009년에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PER-62로 알려진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협정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 원천소득 수령인이 조약 혜택에 자격조건을 갖추고자 하면 엄격한 행정절차와 수익소유권 두 필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PER-62에는 인도네시아 원천소득의 수령인이 다음과 같은 조건(비공식 세무 용어로 6개 조건이라 칭함)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1. 인도네시아 원천소득 발생의 사유가 소득수령인이 조세협약 혜택을 받기 위한 의도가 아님
2. 인도네시아 원천소득의 수령인은 사업을 운영할 자체 경영진이 있고 그 경영진은 독립적인 판단이 있어야 함

3. 인도네시아 원천소득의 수령인은 충분한 유자격자를 고용함
4. 인도네시아 원천소득의 수령인은 무역 또는 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있음
5. 인도네시아 원천소득은 수령인의 회사의 국가의 과세됨
6. 다른 사람의 주장에 응하기 위하여 쓰는 인도네시아 원천소득 수령인의 소득은 50%밖에 없어야 함.

한 조건만 만족시키지 못하면 조약혜택을 누리지 못 할 수 있다.

### Exchange of Information Regulation (Minister of Finance Regulation No 60/PMK.03/2014) (정보 교환 규정 (재무부 장관 규정 No. 60/PMK.03/2014))

각국이 조세회피 또는 탈세 식별을 하는 데 그리고 국가간 조세불복 해결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간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 교환은 다음과 같은 것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1. 이중과세협정/조세조약
2. 조세정보교환협정
3. 다국간 협정

재무부 장관 규정에 따라 정보(예를 들어 조세회피나 탈세의 의심을 받는 납세자가 있는 경우)를 필요로 하는 국세청의 조직은 Director of Tax Regulation II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조약 동반국가의 관할기관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Indonesia's Participation in OECD'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Projects (OECD의 BEPS 프로젝트)

인도네시아는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의 멤버가 아니지만 G-20 국가들의 멤버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옵서버로 그리고 공헌자로 BEPS 프로젝트에 전적으로 참여해 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자기 BEPS의 양식을 발행할 것이며 현재까지 재무부 장관이 발행한 변동의 규정이없다.

## Administration (조세 행정)

### Tax year (과세 연도)

회사의 과세 연도는 회계 연도다.

### Bookkeeping (부기)

인도네시아 회계기준에 따라 US달러를 기능통화로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외국인투자기업 (PMA),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s, PE), 해외 계열사나 외국납세자를 둔 특정기업은 재무부(Minister of Finance)의 승인을 얻어 영어와 US달러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반면, 생산물분배계약 (Contractors of oil and gas Production Sharing Contracts, PSC) 및 도급계약(Mining Contracts of Work, MCS)의 통제 하에 있는 기업들은 서면 통보만으로도 영어와 US달러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장부 작성방법의 변경은 DGT의 승인으로 가능하다.

### Filing and payment (세무 신고 및 납부)

비즈니스를 수행하거나 자유직업을 갖고 있는 납세자는 주기적 세금 납부가 근거가 되는 적당하고 정기적인 회계장부를 유지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에 고정사업장으로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외국기업은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납세자와 같이 법규를 준수한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은 인도네시아 납세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인도네시아 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수행한다.

세금 징수는 자진납세제도로 한다. 법인세는 매월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익월 15일까지이다. 납세신고서는 익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연간법인세신고서는 회계연도말 후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금과다납부는 법인세 세무조사후 환급 가능하다.

이익배당세 징수, 이자회수, 로열티징수, 인대료 징수, 전문서비스 로열티 징수, 기술과 관리 서비스 수수료 징수, 건설 서비스 수수료 징수, 등은 원천징수로 한다. 수령인이 인도네시아 거주자라면 최종분리과세 부채로 간주되지만 수령인이 비거주자라면 원천징수로 최종분리과세 된다. 배당금, 이자, 로열티 등 다른 납부에 대한 원천세 납부는 익월 10일까지 지불되어야 한다.

사원소득세는 사원급여에서 차감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한다.

### Consolidated returns (연결납세신고서)

연결납세신고관련 규정은 없다.

### Statute of limitations (지척기간)

조세사정 및 세금징수에 대한 제척기간은 5년이다.

### Tax authorities (과세당국)

국세청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관리하며 지방세는 주정부 및 districts와 같은 지역정부가 관리하고 징수한다.

국세청은 재무부 산하 부서이며 이 부서는 재정 정책에 대한 기술지침과 절차를 만든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의무(예를 들어 납세순응감시, 세금징수, 카운셀링, 세무조사)를 관리하는 여러가지 단위가 있다. 이 단위들은 대, 중, 소 세무서로서 분류된다. 세무서의 담당자는 각 납세자를 위해 봉사한다.

### Rulings (통지)

세법과 세무절차의 적용이 불분명하면 납세자는 국세청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이 이와 같은 요청을 답하는 기간이 없다. 과세규정은 청원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만 해당되고 기본적으로 세무조사 또는 세금납부반대적 납세자의 위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만 쓰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지는 다른 납세자에게 사용될 수 있다.

### Other taxes on business (다른 기업의 세금)

#### Corporate tax for sharia business (다른 기업의 세금)

대체로 이슬람 금융과 전통적인 금융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자 금지이다. 샤리아법에 이자가 금지되어 있지만 다른 투자수익(예를 들어 계약을 맺을 때 계약 당사자들이 일치하는 렌탈 또는 이익)을 보장한다. 샤리아 율법을 준수하는 제품에 관하여 이슬람 금융에 대한 대부분의 토론은 이자금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투자에 대한 것이다.

전통 은행 또는 금융 서비스(필요한 부분만 약간 수정함)가 받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소득세법에 명시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처리는 샤리아 비즈니스 활동에도 적용된다. 샤리아 은행과 샤리아 금융 서비스의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다.

## Sharia Banking (샤리아 은행)

소득 수령인	소득 유형	세금 처리
은행	이용 고객과의 거래로부터 받는 보너스, 이익 분배, 마진  그 외의 기타 소득	I이자로 처리  일반적인 소득세법에 따라 처리
투자자 /예금고객	위탁펀드로부터 받는 보너스, 이익 배분 및 기타 소득, 해외 샤리아 은행의 지점이나 인도네시아 샤리아 은행을 통해 이루어진 해외 투자  그외 기타 소득	이자로 처리  일반적인 소득세법에 따라 처리

## Sharia financial services (샤리아 금융 서비스)

거래 유형	세금 처리
리스 (Ijarah)	일반적인 운용리스와 같이 처리. 리스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음
금융리스 (Ijarah Muntahiyah Bittamlik/IMB)	선택권이 있는 금융리스와 같이 처리, 리스자산은 과세상 감가상각을 하지 않음
팩터링 (Wakalah bil Ujah)	이익이나 수익은 이자로 처리.
소비자 금융	Gain or profit margin is treated as interest
신용카드	수수료나 기타 소득은 일반적인 소득세법에 따라 처리.
그 밖의 샤리아 금융	수수료나 기타 소득은 일반적인 소득세법에 따라 처리
기업금융 (Mudharabah, Mudharabah Musytarakah, Musyarakah)	이익이나 수익 분배는 이자로 처리
자산의 전달 (공급자에서 최종 이용자에게 직접 전달된 경우를 고려)	일반적인 소득세법에 따라 처리

### Tax on oil and gas contracts in the upstream business (업스트림 석유 및 가스 세금)

석유 및 가스 활동은 국가가 관리하고 광업청의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가 실시하는 것이다. 경영협력계약의 가장 흔한 형태는 생산물분배계약(PSC)이다. 한 개 회사는 한 PSC에게만 맺을 수 있거나 한 PSC에만 participating interest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이 회사는 법인 납세자 등록 번호(ring fence principle)를 획득하여야 한다. Ring fence principle 아래 PSC를 맺는 법인의 탐사비용 또는 손실은 PSC 산하 법인에 양도, 사용 또는 양수가 금지된다. 경영협력계약은 lex specialis(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보통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의 원칙에 우선한다.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들어 있지 않은 사항만 일반 세법에 언급한다.

PSC 하의 투자 및 지출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업무 계획, 예산, 및 정부가 승인한 재정지출의 결재에 맞춰 계약업체는 소요된 원가를 보전 받는다 (원가보상방식).

보통 PSC 계약업체는 생산에서 운영비용을 회수한다. 특정 연도에 운영 비용이 생산된 원유 또는 가스 가격은 초관할 경우 미회수 운영비용은 차기년도에서 회수한다. 계약서에 언급되어 있는 생산분배에 따라 남아 있는 원유와 천연 가스는 정부와 PSC 계약자 사이에서 공유된다.

통일원칙은 업스트림 경영에 사용된다. 이 원칙은 세무 목적으로 손금산입 비용의 혜택은 PSC의 관점에서 PSC 계약자가 정부로부터 회수된 비용과 비슷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반대로도 그렇다.

업스트림 계약자는 세금공제이익에 대한 법인세와 최종분리과세(예를 들어 지점 수익세)의 적용을 받는다. 정부규제 (GR) No. 79/2010를 발행하기 전에 완료된 PSC의 법인세와 지점수익세비율은 PSC들이 체결될 때 우세한 소득세법을 참조하고 PSC들의 계약유효기간동안 여전히 유효하다. GR-79/2010 후에 체결된 PSC들은 계약자가 계약서를 체결될 때 적용된 소득세 비율을 쓸 것인지 아니면 시간 경과에 따른 세율 변경을 따를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 Tax on general mining (광산에 대한 세금)

석탄과 광물 자원의 탐사 및 발굴의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력을 위해 2009년 이전에 외국인 투자자는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업스트림 석유 및 가스업의 경영협력계약과 같은 도급은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 세법에 우선하며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만 일반 세법에 언급한다.

Generation of contract 에 따라서 계약의 과세 조항은 보통 계약유효기간 내에 여전히 유효된 이익에 대한 법인세 계산(예를 들어 법인세율, 손금산입 비용, 등)과 다른 납세의무를 규정한다. 다른 계약은 세법의 원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각 계약의 세밀한 분석은 구체적인 mining contract의 적당한 과세를 결정하기에 필요하다.

광물및석탄광업법 No. 4/2009 이후 계약광구는 더 이상 없다. 외국인 투자자는 광업허가권(Ijin Usaha Pertambangan/IUP)을 얻어야 광업을 할 수 있다. IUP 소지자는 일반 세금 체제에 따른다.

### Offshore drilling companies (해양굴착기업)

석유 및 가스 시추업을 하는 외국기업은 총수입의 15%를 이익률로 간주한 세금이 부과된다(유효소득세율의 3.75% 결과가 되고 인정과세 표준율에 고려함). 석유 및 가스 시추업을 하는 국내기업은 일반 세금 체제에 따른다.

### Vendors and service providers (벤더 및 서비스 제공 업체)

건설업 및 운송업 등과 같은 PSC 및 mining contractors에 어떤 제공자는 보통 총수입의 일정 퍼센트에 대해 세금 부과받는다. 다른 미드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제공자는 보통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 받는다.

### Local content (국산품)

PSC 계약업체는 국산품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불채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PSC 계약자는 상품, 설비, 또는 서비스를 수입하지 못 한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공급자는 PSC 계약자와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떨 때는 PSC 맺을 수 있도록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국내 서비스 공급자의 하도급업자가 되거나 하도급업자와 협력한다.



### 3. Taxes on individuals (개인 조세)

인도네시아 개인 조세 현황	
소득세율	5%-30%
양도소득세율	소득세율과 같음
기본	전세계소득
이중과세방지	있음
과세연도	역년
반납 일자	3월 31일
원천징수세 (인도네시아 원천소득에 적용함)	
- 배당금	10% (거주자); 20% (비거주자)
- 이자	15%/20% (거주자); 20% (비거주자)
- 로열티	15%
부유세	없음
사회보장연금 (직원의 기여):	
- (근로 BPJS)	2%
- (건강 BPJS)	0.5% (2014년1월1일 - 2015년6월30일) 1% (2015년7월1일부터)
상속세	없음
토지 및 건물세	0.3%
토지및 건물취득세	5%
양도세	0.1%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양도); 5% (비거주자의 비상장 기업의 주식양도); 총수입이나 과세 매각가액(중높은 것으로)의 5% (토지 및/또는 건물의 양도)
발기인주식 IPO시	0.5%
부가가치세	10%

### Residence (거주자)

거주자는 12개월 중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자 또는 과세 기간에 인도네시아에 체재하고 거주할 의지가 있는 자로 정의한다. 비거주 납세자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할 예정이 없고 183일 미만 동안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비거주자는 세무 목적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 Taxable income and rates (과세소득 및 세율)

개인 납세자는 전세계 총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 받고 허용된 공제와 비과세 소득은 공제 받는다. 비거주 개인 납세자는 인도네시아 원천소득에 대한 세금만 부과 받는다.

### Taxable income (과세소득)

인도네시아의 개인 소득세는 국가 단위에서만 부과된다. 과세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즉, 소극적 소득 (배당금, 이자, 로열티), 양도 소득, 등 여러가지 소득을 포함한다. 전사원에게 적용되는 현물수익은 직원에게 과세되지 않는다 (고용자에게 공제됨). 특정 사원에게 제공하는 현물수익은 과세될 수 있다.

개인, 하도급업자, 하부자문회사, 하청공급자에 세금은 적용하지만 세금경감은 허가 제공된 정부사업 아래에 계약업체와 제공업체에게 제공된다.

### Deductions and reliefs (공제 및 경감)

다음의 인적공제는 개인거주자의 과세소득 계산 시 적용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공제 근거	공제금액 (연단위)
본인	IDR 2,430만
배우자	IDR 202.5만 (부부합산 소득이 있는 아내의 경우 IDR 2,430만 추가공제)
부양가족	IDR 202.5만 (최대 3명까지 각각 공제)
직책 수당	최대 IDR 600만까지 총소득의 5%
연금납부 (연금 수령자에게 적용)	최대 IDR 240만까지 총소득의 5%
승인받은 연금펀드 분담금 (e.g BPJS)	본인 분담금 총액

재무부에는 위의 인적공제금액을 재결정할 권한이 있다.

## Rates (세율)

과세 소득	세율
IDR 5,000만 이하	5%
IDR 5,000만 초과 - IDR 2.5억 이하	15%
IDR 2.5억 초과 - IDR 5억 이하	25%
IDR 5억 초과	30%
소득유형	유효적인 원천징수세율
인도네시아 기업에서 얻은 배당	10%
개인인 비거주자에게 지불: 급료, 배당금, 이자, 로열티, 임대료 부동산, 상금, 등 기술, 경영 및 기타 서비스 비용	20% <sup>(1)</sup>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이득	0.1%
IPO 가격에 발기인주의 매출에 대한 부가세	0.5%
토지 및/또는 건물 처분익	5% <sup>(2)</sup>
비거주자가 하는 비상장 거주 기업의 주식매매	5% <sup>(3)</sup>
개인에 의한 토지 및/또는 건물 임대료	10%
저금이자 및 정기예금이자	20%
소규모 사업가/기업	1% <sup>(4)</sup>

주:

1. 조세조약에 따라 어떤 인하율의 적용을 받는다.
2. 거래가격이나 과세매각차이 중 높은 것으로 결정한다.
3. 조세조약에 따라 면제되지 않으면 이전값에 근거한다.
4. 총수입에 근거하고 최종 분리 과세대상이다.

### Inheritance and gift tax (상속세 및 증여세)

인도네시아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Net wealth tax (부유세)

인도네시아는 부유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Real property tax (재산세)

재산세는 토지, 건물, 및 영구 구조물에 대해 연간 지불한다. 비율은 보통 부동산 가치의 0.3% 이하지만 높은 비율은 가치가 높은 주택과 큰 재산에 적용된다. 매각차이의 특정한 비과세가격은 제외된다.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치 또는 시장가치의 최대 5%가 과세된다. 취득세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를 받거나 획득한 당사자(취득자)에게 부과된다. 취득세 대상이 되는 취득가치는 해당 건물이나 토지의 실제거래 가격이나 NJOP(과세대상의 부동산과세적용) 중 높은 것으로 결정된다. 각 납세자에게 취득가액이 6,000만 루피아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면세된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3억 루피아 이하인 경우 면세가 적용된다.

### Compliance (규정준수)

역년은 과세연도다.

인도네시아는 납세자가 자기 조세채무를 산출 및 신고 의무를 요구하는 자진 납세제도이다. 하지만 비과세 수입보다 더 적은 소득을 받는 납세자는 신고가 불필요다. 신고서는 과세연도말 이후 3월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하고 어떤 연간 세금이라도 신고서 제출하기 전에 지불되어야 한다.

특정 상항의 납세자는 전년도 조세실적에 근거하여 매월 선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각 지불은 익월 15일까지이다.

## 4. Indirect taxes (간접세)

###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이하 "VAT")는 각 생산단계 및 디스트리뷰션체인에 부과되고 재화의 공급 및 용역제공에 10%의 표준세율로 부과된다. 과세물 및 특정한 과세서비스의 수출에 대한 VAT는 없다. VAT가 없는 수출 서비스는 위탁생산 서비스, 인도네시아 관세징수지역밖에 이용하는 동산에 대한 수선유지 서비스, 및 인도네시아 관세징수지역밖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건설 서비스로 한정된다.

무형자산 (로열티 포함) 및 사실상 모든 인도네시아의 사업(예를 들어 수입 서비스)을 위하여 인도네시아외부에서 인도네시아 내부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VAT가 적용된다. VAT는 모든 제품에 (현지생산품이든 수입품이든)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조는 물건의 원형을 변화시키거나 신제품을 창조하거나 생산성을 증가시키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이것은 제조, 요리, 조립, 포장, 및 보틀링을 포함한다.

VAT on inputs is creditable against the VAT on outputs.

인도네시아는 VAT grouping concept 이 없다. 다른 tax office jurisdictions에 위치하는 하나 이상의 지점이 있는 회사는 VAT지불 및 VAT신고의 일원화를 요청할 수 있다. 일원화는 보통 본사가 신청하지만 어떤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점단위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 Capital tax (자본세)

자본세는 없다.

### Real estate tax (부동산세)

재산세는 토지, 건물, 및 영구 구축물에 대해 연간 지불한다. 세율은 보통 부동산 가치의 0.3% 이하지만 고가의 주택과 대규모 부동산에는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이 IDR 6000만 이상의 토지건물 소유권 취득시 5%의 취득세를 지불하여야 한다. 합병과 관련된 이전 및relative에게 이전시 다양한 면제가 있을 수 있다.

특정 비즈니스(석유 및 가스, 지열, 광업, 농장, 삼림, 등)에 대한 토지 및 건물세는 특정한 토지 및 건물 세금 체제에 따른다.

### Transfer tax (양도세)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매매 시 0.1%에 세금이 부과된다. 장립자 주식 또한 IPO시 지속보유 또는 매각에 상관 없이 주식가격의 0.5%에 대해 최종 분리과세된다. 인도네시아 비상장주식의 비거주자 양도시 양도가의 5%에 대한 원천세가 부과된다. 단 조세협약이 있을 경우 해당 협약이 우선한다.

### Stamp duty (인지세)

인지세는 금융거래, 공증 및 영수증에 적용되며 거래액 및 문서종류에 따라 IDR 3천 또는 6천이다.

### Transfer pricing (이전가격과세)

인도네시아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TP) 규정에 따르면 DGT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정상 가격원칙(Arm's Length Terms)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의 해당 소득이나 비용을 재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기존에 적용된 계층적 토대를 대체하는 가장 적절한 TP방법론을 적용하여야 한다. 국내 특수관계자 거래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즉 특정사업분야에 최종 분리과세 혹은 일반 소득세 부과, 특별소비세(LGST) 부과 또는 석유 및 가스산업의 PSC 계약자와의 거래를 처리하는 데 발생하는 유효세율의 차이를 제외하고, 이전가격 규정의 범위 밖에 있기 때문이다.

각 특수관계자와 100억 루피아 이상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거래 분석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TP문서를 부록(즉, 하나는 주요 문서, 하나는 주요 문서의 부록집)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기업의 상세한 설명 예를 들어 기업구조, 소유권 구조, 조직 구조, 사업활동의 운용측면, 경쟁자 리스트, 기업환경설명, 및 기업의 비용배분원칙
- 관계자간거래의 성격 및 금액
- 되는 이전가격 방법과 특정한 방법을 선택하는 사유
- 비교 분석 결과, 비교 대상 회사, 및 선택된 이전가격 적용에 관한 정보

납세자는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에 상호합의절차(MAP)를 제출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MAP 활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가. MAP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
- 나. MAP적용 절차, 적용 일정 및 필수 정보와 문서
- 다. MAP 적용을 세무당국이 거부할 수 있는 상황
- 라. TP 수정 관련 DGT의 의견서를 준비하기 위한 특별전담팀 구성.

2011년9월에 발표되어 2012년1월1일에 발효된 GR No. 74/201 규정에 따라, MAP을 적용할 자격이 있는 납세자는 잘 못 부과된 과세결정서 (Tax Assessment Letter)에 대한 이의신청(Objection), 심사청구(Appeal), 감면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MAP신청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만일 MAP 진행결과 상호합의가 이뤄진 경우, DGT는 그MAP결과에 따라 과세부과 결정을 수정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만일 MAP가 완료되기 전에 납세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를 조세법원이 먼저 결정하는 경우, DGT는 MAP 진행을 중단시킬 것이다.

2014년12월22일에 재무부가 발행한 최근 규정은 MAP 실행에 관한 기존 규정의 새로운 업데이트와 관련되어 있다. 새로운 규정은 2014년12월22일부터 유효하다. 새로운 규정을 발행하기 전에 제출되었지만 아직까지 결정 되지 않은 MAP 신고에도 이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 Advance Pricing Agreement)는 사전 합의가 이루어진 회계연도부터 최대 3년간 유효하다. MAP 규정을 통해 진행하는 APA는 결정된 때부터 4년간 적용된다.

### Customs and excise duties (관세 및 소비세)

해외에서 인도네시아 관세영역에 들어온 모든 물품은 수입품으로 취급하고 이 수입되는 물품에는 기본적으로 수입세가 부과된다. 수입자는 무역부에 등록해서 수입허가증(API)를 발급받고 관세청국에 등록해서 관세청등록번호(NIK)를 발급 받아야 한다.

특정한 면제(예, 수출목적으로 보세구역 또는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한Import facility)가 적용된다.



자유무역협정 (FTA) 및 경제협력협정(EPA)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FTA/EPA동반국가에서 수입된 특정 수입품의 관세가 더 낮거나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특혜관세에 다음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다.

- 아세안물품무역협정 (ATIGA): 이는 아세안 국가와 인도네시아사이의 협정에 근거하는 특혜관세다. 이 관세는 아세안 국가에서 인도네시아 수입품에 적용된다.
- 아세안-중국 FTA (ACFTA): 이는 중국과 자유무역지역 설립을 위한 아세안 국가사이의 협정이다. 중국은 특별행정구(홍콩과 마카오) 및 대만을 빼고 중국본토를 의미한다.
- 아세안-한국 FTA (AKFTA): 이는 경제협력을 위한 아세안 국가와 한국사이의 협정이다.
- 인도네시아-일본 경제동반자협정 (JEPA): 이는 경제협력과 무역 및 투자 증가를 위한 인도네시아와 일본 정부사이의 협정이다.
-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AANZFTA): 이는 호주와 뉴질랜드와 자유무역지역 설립하기로 아세안 국가들사이의 협정이다.
- 아세안-인도 FTA (AIFTA): 이는 인도와 자유무역지역을 설립하기로 아세안 국가들사이의 협정이다.
- 인도네시아-파키스탄 정부, 수입관세 조건. 이 조건은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정부사이의 특혜 무역 협정(PTA)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만들었다.

정부는 특정 물품의 유통을 억제하기 위하여 특정 물품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한다. 소비세는 주로 알코올 제품과 담배 제품에 부과된다.

물품이 관세지역(항구)에서 반출되기 전에 미지급 관세 및 수입세를 결제하여야 한다. 조건을 지키지 못 하는 경우에는 과소납부액에 따르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최고의 과태료는 과소납부의 1000%이다.

### Environmental taxes (환경세)

인도네시아 중앙 정부는 구체적인 환경세가 없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수자원에 폐수를 버리는 허가에 대해 지방 정부는 과세할 수 있다.

### 5. Withholding taxes (원천징수세)

#### Dividends (배당금)

주식소유 25% 미만인 경우는 15%의 원천세가 적용된다 (선납법인세). 비거주자에게는 20%의 원천세가 적용되며 최종분리 과세된다 (단, 조세 협약이 있는 경우는 예외)

#### Interest (이자)

거주하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지불되는 이자는 과세면제 받는다.

비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저축예금과 예금계정에 대한 이자에 20%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된다. 단, 인도네시아 은행과 외국은행 인도네시아 지점으로부터의 이자는 회사들과 개인들에 20% 최종분리 과세된다.

#### Royalties (로열티)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로열티에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해외송금과 같은 경우 세율이 20%이다. 세무 목적상 로열티는 인도네시아의 재산 또는 노하우 사용 및 재산권 또는 노하우 사용권한 이전을 포함한다.

#### Branch Profit Tax (지점이윤세)

인도네시아에 위치하는 해외기업의 지점에는 표준법인소득세율이 부과되고 소득세를 뺀 순이익에 20%의 지점이윤세가 부과된다. PE의 순이익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채투자하면 지점이윤세면제를 받는다.

-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둔 새로 설립된 회사에 대한 창립자나 창립 구성원으로서의 자본출자
- 인도네시아에 설립되어 주소를 둔 기존 회사에 대한 자본출자

- 인도네시아 내 고정사업장의 활동을 이행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고정사업장이 사용할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 인도네시아 내 고정사업장의 활동을 이행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고정사업장이 사용할 무형재화에 대한 투자

### Wage tax/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개인소득세/사회보험부담)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와 다른 보수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공제하고 감면할 책임이 있다. 고용주는 월 단위로 고용원천징수세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를 가입한다.

- 건강 보험: 3%-6%
- 노후 보장 3.7%
- 산재: 0.24%-1.74%
- 사망: 0.3%

직원도 일정부분을 부담될한다.

### Other (기타)

10%의 확정 원천세가 적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빼고 기술업, 관리업, 상공업, 및 대여업에는 2%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된다.





## D. Audit & Compliance (회계감사 및 컴플라이언스)

인도네시아 회계기준원(DSAK-IAI)이 발행한 인도네시아 기업회계기준 (PSAK)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인도네시아 회계기준에 따른 연간 재무제표작성을 위해 회계기록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지분 소유권 변경은 주주명부 및 특별한 레지스터에 기록되어야 한다. 장부 마감 6개월 이내에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연간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연간보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

1. 특정 경우에 회계사가 감사하는 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for preceding financial year and comparative figures from the previous year)
2. 회사의 상태와 성과에 대한 보고서

### 1. Accounting period (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보통 12개월이고 일반적으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역년을 이용한다. 하지만 회사는 1월1일부터 시작하지 않은 회계 연도를 선택할 수 있다.

### 2. Currency (통화)

회사는 기능통화를 이용해서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하지만 회사는 기능통화 아닌 다른 통화를 이용해서 재무제표 (presentation currency)를 제출할 수 있다. 기능통화는 회사가 운영하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다. 이것은 보통 물품과 서비스의 매출가격이 결정되는 통화다. 인도네시아에의 기업실체 대부분의 기능통화는 루피아(IDR)지만 인도네시아에 IDR아닌 다른 통화를 이용하는 회사도 있다.

### 3. Language, Accounting Basis and Standards (언어와 회계 기준)

한 회사는 인도네시아 언어로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인도네시아 아닌 다른 언어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현금흐름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회사는 발생주의회계를 이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발생주의회계를 통해서 거래 발생시 이를 인식한다. 회사는 정의 및 인식 기준에 따라 자산, 부채, 소득, 비용을 인식한다. 회사의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는 DSAK-IAI가 발행하는 SAK를 준수하여야 한다. 공적책임이 없는 회사는 별도의 SAK(완전한 SAK보다 더 간단함)를 적용할 수 있다.



#### 4. Audit Requirements (감사 요구 사항)

다음과 같은 회사 종류는 전문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장회사
- 은행, 보험, 등 공공기금을 축적하는 회사
- 채권발행회사
- 25조 IDR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회사
- 채권 은행이 요구하는 경우 채무 회사
- 인도네시아에서 사업권을 획득한 특정 외국기업
- 특정 국영기업

인도네시아 공인회계사회(IICPA)가 공표하는 감사기준에 의거하여 감사를 한다. 회계연도로 3개월 이내에 공개기업은 감사재무제표를 자본시장 regulator – 금융감독원(OJK)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감사 재무제표의 금융감독원 (OJK) 제출은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마감후 1개월 이며 review인 경우 2개월이며 감사를 받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미감사중간재무제표는 날 후에 한 달 이내에 OJK에 제출되고 검토중간재무제표는 2달 이내에 제출되고 감사중간제표는 3달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 5. Independence (독립성)

인도네시아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사의 윤리규정에 부합되고 이해의 대립을 피하기 위하여 회계사는 독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OJK가 발행하는 상장고객사의 회계사에 대한 독립성 규정을 포함하여 회계사는정부(예: 재무부)가 발행하는 관련 독립성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계속 6년간 사용하는 감사회사의 파트너 구성에 중요한 변화가 없으면 재무부 장관은 감사법인의 변경을 요구한다.



## E. Labour Environment (노동환경)

## E. Labour Environment (노동환경)

### 1. Employee rights and remuneration (직원 권리 및 보수)

2003년 No. 13 노동법은 근로자들의 교섭권, 최저근로조건 및 행고 및 보상금지불 관련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비록 노동법이 근로자의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합법적이며 질서 있고 평화로운 파업에 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단체협약 및 집회권리, 동일업무에 대한 남녀 동일임금, 강제노동, 단체 결사의 자유 및 집회권리보호 등을 포함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주요조약을 비준했다. 고용 최저연령에 대한 국제노동조약 138은 인도네시아법에 반영되어 있으며 아동노동착취 금지에 대한 국제노동조약 182는 2000년에 인도네시아 법에 비준 및 편입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고용, 노동안전위생, 작업능력표준, 연장근로기준 및 수당에 대한 법령을 포함하는 노동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 2. Wages and benefits (급여 및 복리후생)

주정부 임금 위원회는 각 주 및 시/군 최저임금을 정한다. 이 심의회는 인력이주부, 노동조합, 경영자 협회 및 학계 대표로 구성된다. 최근 몇 연관은 인플레이션 수준의 임금인상이 있었으며 통상 시/군 최저임금이 주정부 최저임금보다 높다.

임금은 최저임금, 잔업수당, 의병 및 휴무급여, 등을 포함한다. 현금 급여액은 최소 75%를 이어야 하며 나머지는 보통 음식 및 교통비를 위해 할당된다. 국내회사 대부분은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급여를 지불한다.

복리후생은 연차 유급휴가(보통 일년에 12일) 및 국경일, 종교적 의무, 가족의 의무(결혼 포함)를 위한 유급휴가, 출산 유급휴가, 및 병가로 구성된다. 해고 또는 퇴직시 보상이 지급된다. 사원은 1개월급여로 THR라는 명절 상여금을 받는다. 명절 상여금은 Lebaran(Ramadhan 기말)전에 무슬림에게 지불되고 크리스마스 전에 기독교 신자에게 지불되고, Nyepi 날전에 힌두교 신자에게 지불되고 Waisak날 전에 불교 신자에게 지불된다.

### Pensions and social insurance (연금 및 사회보험)

사회보장기관(BPJS) 종류는 BPJS Manpower 및 건강보험(BPJS Healthcare) 2가지가 있다. 이 두 프로그램의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불한다. BPJS Manpower의 새로운 제도는 2014년1월1일에 시행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이전(Jamsostek)을 계속하는 것이고 보험료는 여전히 Jamsostek의 보험료(

사용자가 0.24%-1.74%를 지불하는 산재보험, 사용자가 0.30%를 지불하는 사망보험, 사용자가 3.70% 근로자가 2.00%를 지불하는 퇴직연금이 있다.

새로운 건강관리제도는 이전 건강관리제도를 대체하고 2019년1월1일에 완전히 의무사항이 될 예정이다. 2015년1월1일까지 대,중,소 기업은 BPJS 건강보험에 기업과 근로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사원의 월급의 4.5%(2015년1월1일-2015년6월30일사이에 4.0%는 사용자가 지불하고 0.5%는 근로자가 지불함)이다. 2015년7월1일부터 보험료는 근로자 월급의 5%(4.0%는 사용자가 지불하고 1%는 근로자가 지불함)으로 될 것이다.

보험료 결정을 위한 사원 월급의 cap은 인도네시아 tax exemption amount (married with one child)의 2배 또는 한 달에 IDR 472.5만이다. 의무적인 보험료는 남편, 아내, 2자녀가 보험 적용된다. 추가식구는 추가보험료로 보험적용될 수 있다.

현재의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적어도 6개월간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Other benefits (기타 혜택)

개별협상 또는 단체교섭을 통해 기타 복리후생들이 결정된다. 여기에는 보통 가족수당 및 생계비수당, 사원과 가족의 무료 진료제도, 주택, 교통 그리고 작업복 포함된다. 많은 회사는 연금 혜택을 제공한다. 임원들은 보통 회사차량 및 annual home leave와 같은 추가 혜택을 받는다.

### 3. Termination of employment (근로관계 해지)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사원해고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있다. 생산단축이 필요하거나 직원이 부적당하다고 여기더라도 고용자와 직원 사이의 해고보상금 정리 없이 사용자가 사원을 해고시킬 수 없다. 합의를 달성하지 못 하면 사용자는 인력이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퇴직급여는 직원 월급 1-9배인(근무기간에 따름) 해고보상금 및 근속보상금(근무기간에 따라 10개월까지)으로 구성된다. 근로관계 종료시 잔여휴가급여 및 해고보상금 총액의 15%에 해당하는 주택 및 의료보상금이 있다.

#### 4. Labour-management relations (노사관계)

특정기간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계약은 1년간-3년간 노동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사원대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51% 이상의 지지를 획득한 노동조합은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노동분쟁은 주단위 노동분쟁 법원에서 해결된다.

#### 5. Employment of foreigners (외국인 고용)

인도네시아인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이며 외국인 ○○ 인도네시아인 공육 제도가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서 외국인 고용이 허가된다. 통상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도네시아인이 할 수 없는 업무라고 판단하면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외국인은 특정 업무에 고용될 수 없다.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4종류로 구분된다.

1. 전문가
2. 관리자
3. Supervisor
4. 기술자

상기 모든 외국인은 취업허가 필요함.

외국인이 적어도 학사학위가 있어야 하고 인도네시아인 후계자(이사 및 감사 제외)가 있어야만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할 수 있다. 대표사무소 경우 비율은 1대3(국외 거주자 1명 대 인도네시아인 대상 3명)으로 인도네시아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비율은 1대1(인도네시아 주민등록증과 근로계약서 사본이 첨부되어여 함)이다.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초장하기 전에 인력이주부에 mandatory report, 직원복지보고서, 국외 거주자 사용계획 (RPTKA) 인력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들에 1년간 외국인 근로자 position, position 별자격, 및 인도네시아인 직원을 위한 훈련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승인된 인력계획에 따라 인력이주부는 개별취업허가를 발행한다. 취업허가신고의 승인은 3개월 소요된다.

등기 임원이 아니고 BKPM 계획에 없는 position에 대해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 인력 이주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About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a UK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TTL”), its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for a more detailed description of DTTL and its member firms.

Deloitte provides audit,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management, tax and related services to public and private clients spanning multiple industries. With a globally connected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Deloitte brings world-class capabilities and high-quality service to clients, delivering the insights they need to address their most complex business challenges. Deloitte’s more than 220,000 professionals are committed to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 About Deloitte Southeast Asia

Deloitte Southeast Asia Ltd – a member firm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comprising Deloitte practices operating in Brunei, Cambodia, Guam, Indonesia, Lao PDR,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and Vietnam – was established to deliver measurable value to the particular demands of increasingly intra-regional and fast growing companies and enterprises.

Comprising over 270 partners and 7,000 professionals in 25 office locations, the subsidiaries and affiliates of Deloitte Southeast Asia Ltd combine their technical expertise and deep industry knowledge to deliver consistent high quality services to companies in the region.

All services are provided through the individual country practices, their subsidiaries and affiliates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 About Deloitte Indonesia

In Indonesia, services are provided by Osman Bing Satrio & Eny, Deloitte Tax Solutions and PT Deloitte Konsultan Indonesia.

With over 50 partners and over 900 professionals located in two offices, Deloitte Indonesia specialists combine their technical expertise and deep industry knowledge across five professional areas – audit, tax, financial advisory, enterprise risk services and consulting – and deliver consistent high quality services to many companies listed in the Indonesian Stock Exchange as well as multinational and large national enterprises, public institutions, and fast-growing companies.

Osman Bing Satrio & Eny’s practice is registered with the Ministry of Finance, Ministry of Trade & Industry, and the Indonesian Institute of Accountants (IAI). The Audit Partners are registered with both the Capital Market Coordinating Board and Bank Indonesia (the Central Bank). Many of Deloitte Indonesia’s professionals have earned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PA) and other similar certifications, both locally and internationally. Many have also gained certifications such as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CISA), Certified Internal Auditor (CIA), and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 (CISSP).

Within the practice, Deloitte Indonesia has dedicated industry groups including financial services, energy & resources, manufacturing, telecommunications, consumer business and many other industries - combining insight and innovation from multiple disciplines using business knowledge and industry depth with the breadth of professional expertise to help clients exceed their expectations in the complexity of the global business environment.

# Contacts

## Audit

### Rosita Sinaga

**FSI/Audit Advisory Services Leader**

+62 21 2992 3100 Ext. 32555

rsinaga@deloitte.com

### Merliyana Syamsul

**Audit Partner**

+62 21 2992 3100 Ext. 32590

msyamsul@deloitte.com

## Tax

### Melisa Himawan

**Managing Partner**

Tel: +62 21 29923100

mehimawan@deloitte.com

### Cindy Sukiman

**Tax Partner**

+62 21 2992 3100 Ext. 33898

csukiman@deloitte.com

### John Lauwrenz

**Tax Partner**

+62 21 2992 3100 Ext. 33885

nsiregar@deloitte.com

## Financial Advisory Services

### Claudia Lauw Lie Hoeng

**Managing Director**

+62 21 2992 3100

clauw@deloitte.com

### Edy Wirawan

**Executive Director**

+62 21 2992 3100 Ext. 30888

ewirawan@deloitte.com

## Consulting

### Peter Ho

**Consulting Leader**

Tel: +62 21 29923100

peho@deloitte.com

### Stanley Song

**Director**

+62 21 2992 3100

stansong@deloitte.com

### Benedikt Burwinkel

**Technical Advisor**

+62 21 2992 3100

benburwinkel@deloitte.com



## Chinese Service Group

**Dennis Li Yu Ying**

**CSG Technical Advisor**

+62 21 2992 3100 Ext. 30914

yuyli@deloitte.com

**Hartono Laksana Widjaya**

+62 21 2992 3100 Ext. 30956

hwidjaya@deloitte.com

## Korean Service Group

**Bang Chi Young**

**KSG Technical Advisor**

+62 21 2992 3100 Ext. 30955

bangchiyoung@deloitte.com

## Japanese Service Group

**Koji Sugimoto**

**JSG Technical Advisor**

+62 21 2992 3100 Ext. 33882

kojisugimoto@deloitte.com

**Takaaki Hasegawa**

**JSG Technical Advisor**

+62 21 2992 3100 Ext. 30993

takasegawa@deloitte.com

**Osman Bing Satrio & Eny**

**PT Deloitte Konsultan Indonesia**

**Deloitte Tax Solutions**

The Plaza Office Tower 32nd Floor

Jl. M.H. Thamrin Kav 28 – 30

Jakarta 10350, Indonesia

Tel: +62 21 2992 3100

Fax: +62 21 2992 8200, 2992 8300

**PT Deloitte Consulting**

The Plaza Office Tower 30th Floor

Jl. M.H. Thamrin Kav 28 – 30

Jakarta 10350, Indonesia

Tel: +62 21 2992 3100 Ext. 30300

Fax: +62 21 2992 8022

# Notes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a UK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TTL”), its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for a more detailed description of DTTL and its member firms.

Deloitte provides audit,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management, tax and related services to public and private clients spanning multiple industries. With a globally connected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Deloitte brings world-class capabilities and high-quality service to clients, delivering the insights they need to address their most complex business challenges. Deloitte’s more than 220,000 professionals are committed to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 **About Deloitte Southeast Asia**

Deloitte Southeast Asia Ltd – a member firm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comprising Deloitte practices operating in Brunei, Cambodia, Guam, Indonesia, Lao PDR,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and Vietnam – was established to deliver measurable value to the particular demands of increasingly intra-regional and fast growing companies and enterprises.

Comprising over 270 partners and 7,000 professionals in 25 office locations, the subsidiaries and affiliates of Deloitte Southeast Asia Ltd combine their technical expertise and deep industry knowledge to deliver consistent high quality services to companies in the region.

All services are provided through the individual country practices, their subsidiaries and affiliates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 **About Deloitte Indonesia**

In Indonesia, services are provided by Osman Bing Satrio & Eny.

This publ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publ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